**투자일임회사 확약서**

유안타제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이며,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며, 동 요건이 수요예측 배정 시점까지 유지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  |  |
| --- | --- |
| **투자일임회사 수요예측 참여조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의거 | **충족 여부** |
| 1.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기관투자자(투자일임회사 제외)일 것
 | □ 충족 |
| 1.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충족 |
| 1.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가 아닐 것
 | □ 충족 |
| 1.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 충족계약 체결일 : 20XX. XX. XX일평균(3개월) 평가액 : XX 억원 |

※ 수요예측 참여시점 현재 기준

**2.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  |  |
| --- | --- |
| **투자일임회사(고유재산) 수요예측 참여조건** | **충족 여부** |
| 1.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XX. XX. XX |
| 1.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
 | XX 억원 |
| 1.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2.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 충족충족 요건: 1) 또는 2 |

※ 수요예측 참여시점 현재 기준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수요예측 참여기관

대표이사 (인)